

보험금 청구서(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www.lotteins.co.kr

1. 인적사항 및 보상안내 받으실 분 ※ '★'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이 안될 경우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계약자	성명		주민번호		관계(피보험자)	
보상안내 받으실곳	성명		★휴대폰		e-mail/팩스	
	주소					

2. 사고 관련사항

세부내용	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고장소	
	경위	※ 육하원칙 작성 예) 3일전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뎈 미끄러짐 등						

※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개별 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보험금 항목만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참고사항에 별도 기재부탁드립니다.

3. 휴대품 손해 상세(손해입은 휴대품에 대해 작성바랍니다.)

품명	수량	구입금액	구입년월

4. 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 확인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에 체크(V)

보험회사명 (통신사)		보험종목	
----------------	--	------	--

5. 보험금 청구 위임

위임 하시는 분	성명		주민번호	
위임 받으시는 분	성명		주민번호	

6. 보험금수령 계좌 ☐ 자동이체 계좌 요청시 체크 (★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	------	--

※타인 계좌로 수령하시려면 별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 수익자 계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고객 안내 및 확인사항

-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 (손해사정사 선임 및 비용, 손해사정서의 열람 교부등 관련 중요사항, 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기간, 지급기일 등)는 별지의 보험금 지급절차안내문 '을' 통하여 설명 받고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수탁자는 당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심사, 지급 및 보험사고조사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자(당사 자회사,당사로부터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 및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등)을 말합니다.
- 보험금 심사 절차, 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 및 손해사정이 이루어진 경우 손해사정서를 문자 서비스로 수신함에 동의 합니다.
-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본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목적달성 후 즉시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장해 진단,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하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

작성일	20	년	월	일	청구권자	성명 :	(인)
-----	----	---	---	---	------	------	-----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서류 안내 및 접수 관련 문의 : ☎ 1588-3344
- FAX 접수 : 0507-333-2000
- 우편접수 : (04315)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0길 11 용산더프라임빌딩 업무동 20층 롯데손해보험 장기사고접수파트
- 홈페이지 : www.lotteins.co.kr
- 모바일 : PLAY스토어, 앱스토어 검색 -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공식)"

여행자보험 구비서류 안내

통합공통서류(1~3 각1부) + 휴대전화사고, 기타물품사고 별 공통서류와 사고유형별 추가서류

통합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여권사본(신분증 부분) 3. 출입국기록(하기 3개 중 택1) 가. 왕복 항공권티켓 (E-ticket 가능) 나. 여권 출입국도장부분 (입, 출국 도장 모두)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자주 찾는 민원 → 출입국증명
휴대전화 사고	공통서류	1. 통합공통서류 1~3 각 1부 2. 통신사 이용정보기록 확인 서류 ※고객명, 생년월일, 파손된 휴대폰의 휴대폰번호 및 모델명, 기기 변경일이 기재된 하기 서류여야 합니다. 가. SKT :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T World홈페이지 → my T → 조회 → 나의 가입정보에서 출력 가능 2) 반드시 가려진 정보 본인인증을 실시하신 후 출력하여 제출 나. KT : 가입증명원, 가입정보, 휴대폰 변경이력 1) KT 홈페이지 → 마이 페이지 → 가입정보에서 3부 모두 출력 가능(KT플라자에서도 가능) 2) 반드시 3부 모두 출력하여 제출 다. LGU+ : 가입사실확인서 1) LG U+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상품가입안내 → 가입조회에서 출력 가능
	파손	3. 수리 가능한 경우 : 파손사진, 수리비견적서 및 영수증 4. 수리 불가능한 경우 : 파손사진, 수리불가확인서
	도난	5. 해외 Police Report 6. 경찰서 등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가. 자유여행의 경우 : 사고경위서 1) 별개의 양식 없이 목격자 및 동행자인 제 3자가 6하원칙에 따라 a4용지에 본인이 자필 작성 2) 사고경위서 작성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나. 가이드를 동반한 여행사 여행의 경우 : 동행한 가이드의 사고경위서 및 가이드의 여행사 재직증명서
기타물품 사고	공통서류	1. 통합공통서류 1~3 각 1부 2. 휴대폰 구매 영수증 또는 카드 구매 내역
	파손	3. 항공사 수하물 운송 중 사고 : 파손사진, 항공사의 배상불가확인서 4. 수리 가능한 경우 : 파손사진, 수리비견적서 및 영수증 5. 수리 불가능한 경우 : 파손사진, 수리불가확인서
	도난	6. 평소 도난물품 이용 사진 7. 해외 Police Report 8. 경찰서 등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가. 자유여행의 경우 : 사고경위서 1) 별개의 양식 없이 목격자 및 동행자인 제 3자가 6하원칙에 따라 a4용지에 본인이 자필 작성 2) 사고경위서 작성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나. 가이드를 동반한 여행사 여행의 경우 : 동행한 가이드의 사고경위서 및 가이드의 여행사 재직증명서

여행자보험 주요 안내 사항

통합공통서류(1~3 각1부) + 휴대전화사고, 기타물품사고 별 공통서류와 사고유형별 추가서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험의 목적을 방지 또는 분실 2.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3.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들에 관련된 사고.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3. 따라서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물품의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통신사 휴대폰 보험 및 타사 여행자 보험 휴대폰손해 특별약관 가입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을 위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이용 목적	• 보험사고 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 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잔존물 대위, 구상업무 관련 •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금융거래 관련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수납을 위한 금융거래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계약체결, 보험금청구 등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 •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금융사고 및 보험사기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는 보유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보관함.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 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수집 이용 항목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u>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u>민감정보 수집 이용</u>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 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u>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u>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제공에 관한 사항

2-1 국내제공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 등: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법원, 검찰, 경찰청,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회사 등: 생명 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보험금지급 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 의사, 의료자문대행법인, 법무법인(변호사), 추심업체, 잔존물매각업체, 위탁 콜센터,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 • 계약관계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 보험협회 등: 생명 손해보험협회 • 제후사: 가사도우미지원 제후업체(장기보험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등: 보험업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 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 보험회사 등: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 금융거래기관: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납) • 업무수탁자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 계약관리 업무 • 계약관계자: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 보험협회: 보험금 지급 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 • 제후사: 가사도우미지원 제공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u>민감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 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2 국외 제공

제공받는 자	국외 재보험사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재보험금 지급 심사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 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lotteins.co.kr]에서 확인 가능)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1), 국토교통부1), 생명 손해보험협회 1) <u>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기재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한함</u>
조회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사고 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 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보험사고 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 심사1) • 생명 손해보험협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1) <u>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기재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한함</u>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해당 보험거래 <u>종료 후 5년까지</u>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조회</u>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교통법규 위반정보1), 교통사고조사기록(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1) 1)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 조사기록 기재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한함
	위 <u>민감정보 조회</u>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1) 1)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 기재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한함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u>동의</u>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본인	법정대리인	동의일자
서명	서명	YYYY/MM/DD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보험금 청구방법, 지급절차 및 인터넷 조회 안내	•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며, 보험금 청구는 사본 허용이 가능하나, 필요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상담당자는 서류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당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 (www.lotteins.co.kr)에서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안내 (우편, FAX) ➡ 서류접수 (우편, 방문) ➡ 보상여부 검토 조사 ➡ 보험금 결정 지급 ➡ 지급 안내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고객님은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며 미선임 시 보험회사는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님이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손해사정사 선임 표준 동의기준 (근거: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에 적용하며,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3영업일 내 선임여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10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법규(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 신용정보 관련 법규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 중재· 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⑤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⑥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합리적 보수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⑦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보험회사 비용 부담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 한 때 3. 보험계약자등 비용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보험 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4.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보험업법 제 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등)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동의 시 피보험자의 민감정보가 삭제된 손해사정서 교부가능)
의료심사	•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장래진단 포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검정(재진단) 하는 경우 비용은 롯데손해보험이 부담합니다. •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사건 분담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 및 기타손해보험상품에 복수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실비 보상 상품의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대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손해보험계약 1.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2. 벌금보상 보험계약/ 3.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계약/ 4. 민사소송 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 보상 보험 계약/ 5. 홀인원 비용 보상 계약/ 6. 가전제품수리비용 보상 보험 계약 • 타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심사단계에서 사고조사등의 사유로 접수대행이 거절 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각각 청구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당사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내 민원창구 / 전화 : 1588 - 3344 / 우편 : 서울시 중구 남창동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빌딩 7층 소비자보호팀)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및 지연지급 안내	•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입니다. (단, 소송,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사고 조사, 회사의 조사요청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제외)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 이율계산'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가처분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사고일자, 진단일자, 수술일자 등. 담보별 보상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보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안내장을 참고, 또는 콜센터 (Tel. 1588-3344)로 문의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진료비확인신청제도	•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주는 권리 구제제도입니다. •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 -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진료비 중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항목의 비용 • 진료비 확인방법 : 진료비 확인요청은 인터넷조회, 모바일 앱, 우편 / FAX, 방문상담으로 확인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644-2000)
보험범죄 신고센터	• 롯데손해보험 : 02-3455-3777(익명보장)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